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444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7. 1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소18242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5. 22. 03:15경 화성시 F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G휴게소 내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측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차라인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6. 28.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99,000원을 제외한 1,199,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H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 : 50%,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50%)에 따라 2019. 12. 26.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99,800원(1,199,600원 × 5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4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휴게소 내 주차장 통로로서, 일방통행만이 가능하고 별도의 차선 구분이 없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점, ③ 위 통로의 폭이 충분히 넓어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선 차량의 추월을 위한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에다가 원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원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 및 부당이득의 범위

1) 구상의 범위

150,580원

○ 계산근거 : 총 손해액 1,498,600원(= 피고 지급 보험금 1,199,600원 + 자기부담금 299,000원)
× 원고 차량 과실비율 30% - 자기부담금 299,000원

2) 부당이득의 범위

449,220원(= 원고 지급금 599,800원 - 구상 범위 150,58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1. 16.부터(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1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H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피고는 물론 원고로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